

의안번호	2205931
의 퇴 인	이소영의원
회 답 일	2024. 12. 12.
추 계 번호	24B54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222억 1,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22억 1,400만원(연평균 44억 4,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녹색건축물의 확대(안 제31조제7항 신설) - 헌법기관등의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22,214	—	—	—	—	22,214	4,443

주: 1.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은 추계 첫해인 2026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2. 추계기간 동안 헌법기관등의 건축물 연면적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단위면적당 용역(컨설팅) 단가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단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주. 헌법기관 등 제출자료 및 국토교통부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제5·6항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헌법기관등”이라 함)는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설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함. 이 경우 정부는 통보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제5항)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음(제6항)	의무·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국회 등 헌법기관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임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 →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의무화	
2	안 제31조제7·9항 신설(녹색건축물의 확대)	헌법기관등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여야 함. 이 경우 헌법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책의 범위에서 그 내용과 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제7항) 정부는 헌법기관등이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음(제9항)	의무·재량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6조제5·6항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	• 미대상 － 현재에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이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련 연구·용역 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소관기관</th><th>용역명</th><th>금액</th><th>수행연도</th></tr> </thead> <tbody> <tr> <td>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td><td>헌법기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방안 마련</td><td>90</td><td>'22년</td></tr> <tr> <td rowspan="2">국회</td><td>국회청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 용역</td><td>4.5</td><td rowspan="2">'23년, '24년 (매년 수행)</td></tr> <tr> <td>국회청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응 컨설팅 용역</td><td>18.9</td></tr> </tbody> </table> 주: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기준인 15,000톤 이하이므로(국회는 연간 20,000톤 이상)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동일 용역으로 추진함	소관기관	용역명	금액	수행연도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방안 마련	90	'22년	국회	국회청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 용역	4.5	'23년, '24년 (매년 수행)	국회청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응 컨설팅 용역	18.9
소관기관	용역명	금액	수행연도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방안 마련	90	'22년														
국회	국회청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 용역	4.5	'23년, '24년 (매년 수행)														
	국회청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응 컨설팅 용역	18.9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2	안 제31조제7·9항 신설 (녹색건축물의 확대)	○	(제7항)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고 – 헌법기관등의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 계획 수립 비용
		×	(제7항 및 제9항) 녹색건축물로의 전환 이행 및 정부의 재정·기술 지원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헌법기관등의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에 따른 실 제 이행 비용, 정부의 재정·기술 지원 등 추가재정소 요가 예상되니, 각 기관별 녹색건축물 전환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현실점에 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
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11.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2.1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녹색건축물의 확대—헌법기관등의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안 제31조제7항 신설)

- 현행법 제31조제6항²⁾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도록 규정

※ [참고자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온실가스 관리현황 참고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이하 “헌법기관등”이라 함)도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참고로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개정안 관련 국토교통부 사업 예산 현황: 2022~2025년(안)

(단위: 억원)

회계 또는 기금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2022	2023	2024	2025(안)
기후대응기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6132-300)	2,245	1,910	1,275	1,145
	건설·교통·건축물목표관리 제 (6433-304)	8	9.5	9.5	9.5
	－ 목표관리제(건축물)				

주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정과제 이행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건물부문 중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2. (목표관리제(건축물))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및 이행 지원 기반 마련

자료: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제출자료 및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기후대응기금」, 2024.8.

2) 법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본 추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³⁾ 사업 중 종합사업지원계획(사전조사 및 종합건설팅)을 참고하여 헌법기관등의 녹색건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비용 추계

- (추계방법) 국토교통부 사례를 참고하여, 헌법기관등의 건축물 연면적에 단위면적당 용역(건설팅)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추계기간)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해인 2026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헌법기관등 건축물 연면적) 1,443,791㎡ (’24년 12월 기준)
 - 이때, 추계기간 동안 헌법기관등의 건축물 연면적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3] ‘헌법기관 등’의 건축물 규모(연면적): 2024년 12월 기준

(단위: ㎡)

대상 기관	연면적	비고
국회	339,377	• 녹색건축 인증 건물인 국회소통관 건물 연면적(24,733㎡) 제외 ※ 여의도동 지역 외 건물(부산도서관, 고성연수원 등)은 제외
법원	872,054	• 전국 각급 지방법원급 이상 24개 청사
헌법재판소	26,864	
선거관리위원회	205,496	• 245개 건물(245동)
합 계	1,443,791	

주. 국회사무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 (단위면적당 용역(건설팅)비용 단가) 15,084원/㎡ (’25년 기준)
 -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단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적용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추계결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첫해에 222억 1,400만원으로 추계됨

3)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세부사업 중 ‘사업운영 및 지원’ 내역사업(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 종합건설팅(사전조사 및 건설팅): 5,000백만원
 - 동당평균면적(473㎡)×700동**×단가(15,084원**/㎡)
 - * 최근 희망건축물 접수 물량 등을 고려한 예상물량 대비 약 2배(700동)
 - ** 전년 대비 5% 단가 상승률 반영(14,366원 → 15,084원)

[표 4] 헌법기관등의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비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면적(A, m ²)	1,443,791	—	—	—	—	—
용역(컨설팅) 단가 (B, 원/m ²)	15,386	—	—	—	—	—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22,214	—	—	—	—	22,214

주: 1.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은 추계 첫해인 2026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2. 추계기간 동안 헌법기관등의 건축물 연면적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단위면적당 용역(컨설팅) 단가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단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주. 헌법기관 등 제출자료 및 국토교통부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assembly.go.kr

[참고자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온실가스 관리현황

(환경부 제출자료)

□ 헌법기관등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 현황

-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로 지정** · 감축목표 부여 및 달성여부 매년 이행점검 중('14~)
 - *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1.5만톤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 ** 국회의 경우 일괄 '국회사무처'로 목표관리업체 지정 · 고시 중(건물부문, 국토교통부)
- (기타 헌법기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신규 편입('22.3~)
 - ※ (절차) 이행연도('24년) 감축목표 설정 → 감축이행 → 이행실적 제출(~'25.3)

<헌법기관등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현황: 2017~2025년(안)>

(단위: 톤CO₂eq)

대상기관(업체명)		국회*	기타 헌법기관**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2017	목표 배출량	25,702	—	—	—
	배출량	21,394	—	—	—
2018	목표 배출량	24,796	—	—	—
	배출량	22,334	—	—	—
2019	목표 배출량	23,541	—	—	—
	배출량	21,570	—	—	—
2020	목표 배출량	24,830	—	—	—
	배출량	21,203	—	—	—
2021	목표 배출량	24,480	—	—	—
	배출량	20,989	—	—	—
2022	목표 배출량	25,021	—	—	—
	배출량	21,629	—	—	—
2023	목표 배출량	22,733	1,256	70,660	8,818
	배출량	22,233	1,366	66,005	6,948
2024	목표 배출량	21,525	1,273	68,449	8,121
	배출량	—	—	—	—
2025	목표 배출량	22,387	—	—	—

* (국회) '24년 배출량은 '25.9월에 확정 예정

** (기타 헌법기관) '24년 목표배출량은 각 기관이 '23.12월말 제출한 값 기준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24.2)에 따라 기준배출량 조정 후 추후 변경 예정 (~'24.12)